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u>25822</u> 제안연월일: 2023. 12. 번호 ^제 아 기 : 제거아기의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제출) 일자	심 사 경 과
	임오경의원	2022.11.1.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정우택의원	2022.11.2.	(22.1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안철수의원	수의원 <u>2022.11.2.</u>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
	김기현의원		소위원회(22.11.23.), 제403회 국회(임시
	검공판의전 ZUZZ.11.5.	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3.2.21.),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	
	김영선의원	2022.11.4.	세404회 국회(참시회) 세1차 립인참사세2 소위원회(23.3.21.), 제410회 국회(정기회)
	김도읍의원	2022.11.4.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3.9.19.) 상정
재난 및	조수진의원	2022.11.2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안전관리 기본법	이헌승의원	2022.11.23.	직접 회부(2023.2.13.)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2022.11.24.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 소위원회(23.2.21.), 제404회 국회(임시회)
	이태규의원	2022.12.5.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3.3.21.), 제
	이명수의원	2022.12.6.	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
	김영주의원	2023.8.3.	위원회(23.9.19.) 상정
	정부	2022.12.28.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3.3.2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3.9.19.) 상정

최기상의		2022.12.7.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3.3.2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최기상의원	2022.12.8.	대체토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 소위원회(23.9.19.) 상정
		2023.1.17.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3.2.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 소위원회(23.9.19.) 상정
	박성민의원	2023.1.18.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3.2.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3.9.19.),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3.9.19.) 상정
	이해식의원	2023.4.18.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3.6.2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 소위원회(23.9.19.) 상정
	강병원의원	2023.7.24. 2023.7.2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3.9.5.)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
	이해식의원	2023.8.9.	소위원회(23.9.19.)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3.9.19.)는 위2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3.9.20.)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마련 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매뉴얼 정기점검 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 보하도록 함.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징후 발견 시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시·도지사도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응급조치 실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을 기상청장이 직접 예보·경보·통지 및 문자·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추가함.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정보 제공 주체를 현행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으로 하고, 재난의 예방·대비 목적의 정보 제공 요청은 재난 발생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한 경우에 한정함.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제한 및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함.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 중 "제15조의2제2항"을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15조의2제2항"을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의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

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받은 경우"로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그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과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의3(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이하 "개선과 제"라 한다)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과제의 이행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과제의 이행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 해당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 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작성·운용하여야"를 "작성·운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점검하여야 한다"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정기적으로"를 "반기별로"로, "필요한 경우"를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로 한다.

이 경우 매뉴얼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8조의2제4항 중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재난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

제46조제1항 중 "제39조부터"를 "제37조제1항 및 제39조부터"로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부상을"을 "부상(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으로, "치료"를 "치료(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6조의10 제목 중 "공표"를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으로 하

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조사를"을 "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개발·조사"를 "개발·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공표절차"를 "공표절차 및 안전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기준"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지수를 고려하여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안전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6조의11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 제5항) 중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수립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 본부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 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대책본부 또 는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의 예방·대비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부터 제4항까지 중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을 각각 "행 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대응"을 각각 "예방·대 비·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

공 요청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로 한정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해당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설을"을 "시설(이하 "재 난취약시설"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보험사업자는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이하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난취약시설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⑥ 재난취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 링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업 자는 해당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공제회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 ⑦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6조의10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의2제1항 중 "제78조제2항"을 "제7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78조제3항"을 "제78조제4항"으로 한다.

제78조의4 중 "대응"을 "예방 · 대비 · 대응"으로 한다.

제79조제5호 및 제6호 중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을 각 각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2. 제7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의1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취약시설보험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취약시설보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4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	
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	
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	2
에게 건의하거나 <u>제15조의2</u>	<u>제15</u> 조의2
<u>제2항</u> 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제3항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	③
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	

위에서 <u>제15조의2제2항</u>에 따른 수습본부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 전 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한다)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u>②</u> ~ <u>⑧</u> (생 략)

<신 설>

	- <u>제15</u> 조의2제3항
세	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
	본부) ①
	<u>경우에는 대통령</u>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u>
	① 해정아정보자라스 게나이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피 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 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의 설 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 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u>③</u> ~ <u>⑨</u> (현행 제2항부터 제8 항까지와 같음)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19조(재난 신고 등) ① (생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 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 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재난관 재난안전관리교육)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 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 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제1 항에 따른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재난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 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 는 즉시 그 사실을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관 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 려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3(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이하 "개선과제"라 한다)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과제의 이행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과제의 이행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 저 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 기관리 매뉴얼을 <u>작성·운용하여</u>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 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②・③ (생 략)
-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 해
당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분
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u>한다.</u>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
뉴얼 작성·운용) ①
<u>작성 · 운용하</u>
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
<u>o</u>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4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뉴얼의 점검을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 ⑨ (생 략)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 ③ (생략)
 -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중 「지진・ 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 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 지진해일・화산과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경 보・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 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10	_
	_
반기별로	_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u>-</u>
있고, 그 결과에 따라	_
	_
	-
	_
	_
	_
	_
•	
·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_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u>다음</u> 건	<u>}</u>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u>다음 결</u>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u>}</u>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u>다음</u> 건	<u>}</u>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u>다음 결</u>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u>}</u>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u>다음 결</u>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u>}</u>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u>다음 결</u>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u>}</u>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u>다음 결</u>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u>}</u>

<신 설>

<신 설>

<신 설>

⑤ ~ ⑫ (생 략)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9조 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 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1. 2. (생 략)
- ② (생략)
-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 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 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 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 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 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 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 가 <u>부상을</u> 입은 경우 및 부상 <u>부상(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말</u>
-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연재난 ⑤ ~ ⑫ (현행과 같음) 응급조치 등) ① -----제1항 및 제39조부터-----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

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 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 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 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 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 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 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 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① 저 (생 략)

<신 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 | 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u></u> ঠ্
료(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한다)
<u>.</u>
②·③ (현행과 같음)
세66조의10(안전지수의 <u>공표 및</u>
아전진단의 실시 등) ① (현행

- 과 같음)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지수를 고려 하여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안전 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 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3 -----
- -- 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

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u>공표절차</u>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 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서 신설>

<u>4</u>
<u>개발·조사 및 안전진단의</u>
실시
<u>⑤</u>
공표절차 및 안전진단의 실시
<u>방법, 절차, 기준</u>
세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
전관리조치) ①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
<u> 기이거 '면기'/ 게이러나 '시구</u>

②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 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 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항에 따른 지병자치단체의 장(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

 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 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 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 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ㆍ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 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 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 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 성·운영할 수 있다.

(7) ---

-----수립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의 요청 등 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제14조제1항에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 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 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 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의 예방・ 대비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2. ((생	략)
------	------	----	----

②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 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 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
1. · 2.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 관·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 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 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 다.
- ④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 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 1. 재난 <u>대응</u>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 2. (생략)
- 3.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 른 재난 <u>대응</u> 관련 업무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 이 파기된다는 사실

- 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u>대응</u>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⑥ ~ ⑨ (생 략) <u><신 설></u>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 제 공제의 가입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
 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
 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

⑤
예방·대비·대응
<u> </u>
· ⑥ ~ ⑨ (현행과 같음)
①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
<u>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u>
등의 제공 요청은 재난이 발생
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하다
고 판단되는 때로 한정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해당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
공제의 가입 등) ① (현행과 같
승)
②
<u>시</u>
설(이하 "재난취약시설"이라 한
<u>다)을</u>

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③·④ (생 략) <u><신 설></u>

- 1. ~ 3. (현행과 같음)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험사업자는 재난취약시설을 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이하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난취약시설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 ⑤ 재난취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해당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 ㆍ공제회비 등에 대한 안내를하여야 한다.
- ①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보험 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 구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 로 제공할 수 없다.
-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6조의 10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
원 의제) ① 제71조제3항에 따	원 의제) ①
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및 <u>제78조제2항</u> 에 따라 행정안	<u>제78조제3항</u>
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	
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	
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	
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	② <u>제78조제4항</u>
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	
행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8조의4(벌칙) 제74조의3제5항	제78조의4(벌칙)
을 위반하여 재난 <u>대응</u>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u>대응</u>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9조(벌칙) (현행과 같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 의 벌금에 처한다.
- 1. ~ 4. (생략)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 3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 6. -----3제2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생략)

제8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 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u>행정안</u>전부장 관, 시·도시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
- -----행정안전부장 관, 시·도시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
- 7. (현행과 같음)

제8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2. 제7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
- ③ (현행과 같음)